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5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2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8
3.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5
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26
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31
6.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정부안)	36
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43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 특례: 창업기업, 벤처기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 출자방법: -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한도: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출자방식: (현행과 같음) ○ 출자방법: - 안도걸의원안: <u>7년</u> → <u>10년</u>으로 완화

현 행	개정안
* 코넥스상장기업일 경우 7년 이내 → 2년 이내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2030. 12. 31. (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2))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50),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 등이¹⁾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²⁾를 통해 투자하여 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출자자	방식	대상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직접	①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⑤ 코넥스상장기업	○	○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신기술사업자, ⑤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직접	②, ③, ④, ⑤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기금운용법인등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X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간접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①, ②, ③, ④		

□ 동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음.

한편,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출자대상에 추가하였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³⁾이 벤처투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3) 참고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16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까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	27	16	15	64	24	41	120	205	65	120	123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벤처투자규모가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반등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는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의 개선이 기대되고, 벤처기업 등의 특성상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

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⁴⁾

둘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 대상: -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출자지분(특수관계인 주식·출자지분 제외)을 취득한 내국법인 * 단,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제외 ○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u>5%</u>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은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제2항): 출자금액*의 <u>5%</u> + 증가분**의 <u>3%</u> * Max (①취득가액, ②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액의 60%)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출자방식: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해당 기업 설립 후 <u>7년</u>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 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u>10%</u>(천하람의원안)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u>10%</u>(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u>15%</u>(안도걸의원안))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제2항): 출자금액의 <u>5%</u> + 증가분의 <u>5%</u>(정부안) 출자금액의 <u>10%</u>(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u>15%</u>) + 증가분의 <u>3%</u>(안도걸의원안) ○ 출자방식: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해당 기업 설립 후 <u>10년</u>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단, 천하람의원안은 제1항만 연장 2030. 12. 31.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 (윤준병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천하람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정부안)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1. 24. 발의(의안번호 7803),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등⁵⁾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⁶⁾에 신규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천하람의원안은 직·간접투자 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는 공제율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년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에서 5%로 인상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직·간접투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15%로 확대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문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규로 취득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신설·시행된 제도로써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예정임.

또한, 2023년 세법개정 당시 국내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⁷⁾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음.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 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35	172	260	335	676	652	533	566	57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 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95호, 2023.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대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민간 중심의 출자를 통해 창업기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 개선, 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정부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금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내 벤처펀드 출자현황⁸⁾을 보면 상당 기간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의 투자가 2021년 3조 9,955억원에서 2024년 2조 3,15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동 제도의 법인투자자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벤처투자자에 있어 동 제도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⁹⁾

아울러 적용기한이 과도하게 길 경우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주기도

8) 벤처투자회사·조합 +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통계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함께 길어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 벤처투자·펀드결성 세부현황(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 ·펀드결성 10.6조원', 2025. 2. 12.

둘째,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특례 수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제율 인상과 관련하여 유사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취지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¹⁰⁾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넷째, 정부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하여 추가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는 모펀드를 통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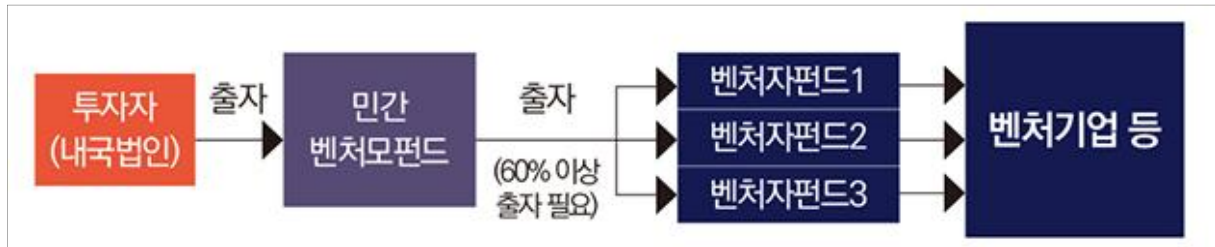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의 특성상 실제 투자대상 기업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동 조세특례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고¹¹⁾,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벤처기업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을 늘리면서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섯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섯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

11)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¹²⁾

문 의 처
02)6788-5154

12)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제1항) ○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투자 ○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김영진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 ○ 특례: 인수가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김영진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2026. 1. 1.(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김영진의원안 2025. 2. 25. 발의(의안번호 8422),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은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추경호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정부안은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에 한하여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고,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함.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는 면직물·모직물 등 섬유, 각종 화학물질, 반도체 소재 및 제조용 기계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있음.

□ 현행법 제13조의3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 비율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¹³⁾”)의 소재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 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각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제13조의3제1항),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¹⁴⁾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제13조의3제3항).

본 특례제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19년 8월 5일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당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투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인수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 개정안은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확보를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소

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본 제도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만성적인 해외 의존구조와 낮은 자체 조달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구 분	2018년	2022년
중국	28.3	29.9
일본	18.3	15.0
미국	11.8	10.0
대만	6.8	9.5
독일	5.0	4.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2023. 4.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

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소부장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소부장특별회계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20년 결산 기준 2조 757억원, '25년 예산 기준 2조 2,843억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총 11조 5,391억원을 조성하여 소재부품 장비경쟁력강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8조 5,733억원, 74.3%), 기반구축(2조 437억원, 17.7%), 자금지원 및 생태계구축(9,221억원, 8.0%)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공급하였음.

참고로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약 5.4% 증가한 2조 2,84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¹⁶⁾.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2025. 4.

16) 기술개발 1조 8,996억원, 기반구축 3,777억원, 자금지원 0원, 생태계구축 70억원

[소부장특별회계 운영 현황(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기술개발	13,308	17,349	18,435	18,657	17,984	85,733
기반구축	4,021	4,328	4,058	4,443	3,587	20,437
자금지원	3,400	3,800	1,400	300	40	8,940
생태계구축	15	64	70	62	70	281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조세지출 실적을 감안하여 본 조세특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조세특례의 경우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2021년 145억원, 2022년 174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이후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신설	145	174	0	0	0	0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지출 실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기반이 미흡한 기술 취득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기업의 인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기업 인수 시 과세특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의4)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 ☐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특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공포한 날 (윤준병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2. 12. 발의(의안번호 8080),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등의 모험자본 회사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특화선도기업¹⁷⁾에 신규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 제13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 회사¹⁸⁾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음.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 신제품 개발 촉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임.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 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특히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될 수 있음.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에 따라 한시법이었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상시법화하였으며 (2020. 4. 시행),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면서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고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지출 실적은 없는 상황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도입	-	-	-	-	-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동 특례에 따른 투자대상인 특화선도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중, 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기본역량과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2025년 4월 기준 총 101개 기업¹⁹⁾이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개정안은 본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

19) 소재분야 35개사, 부품분야 42개사, 장비분야 24개사

('21년 22개사 → '22년 21개사 → '23년 23개사 → '24년 22개사 → '25년 13개사)

기업 등에게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⁰⁾.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R&D,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실증평가 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둘째, 본 제도는 한 차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제도 도입 이래 조세지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심

2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2025. 4.

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본 조세특례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적용실적이 없어 제도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 (3기) 평균 112.2억/3.5년, (4기) 평균 91.2억/3.5년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154

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선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해당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매입 취득제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연장</u> - <u>2028년 12월 31일(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이인선의의원안 2025. 2. 13. 발의(의안번호 제8117호),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제9294호),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제11544호),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제12052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5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예정인 창업기업 등에
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천하람의원안, 추
경호의원안, 정부안), 5년(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①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조
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③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
고 있고,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구체적으로는, ①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벤처기
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등,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²¹⁾하여
벤처기업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라) K-OTC²²⁾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21) 창업 5년 이내 및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에 한정하며,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자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이어야 함).

22)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의미

주식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②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바)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③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2024년 감면 실적은 53억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60억원, 6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 (전망)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3	53	60	66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후 그 주식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위축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둘째,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다²³⁾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해서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필요성·타당성이 있고,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동 과세특례가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동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²⁴⁾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

2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 36,959개를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조달 규모는 1,720만원 수준임. 신규자금은 주로 민간금융 기관대출(28.8%), 정책금융 기관지원(24.1%)을 통해 조달함.(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p.51·53)

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3년과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24)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예외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p. 167~169.

6.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5조) ○ 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벤처기업²⁵⁾ 출자자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별세·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9조²⁶⁾는 법인(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국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²⁷⁾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²⁸⁾는 신성장 벤처기업의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6)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7) 제2차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무한책임사원은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됨.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 1명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국가의 조세채권 보전 및 조세징수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두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 한편, 2024년 기준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은 3조 414억원이고, 원납세자의 납부금액은 1,629억이며, 이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경우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은 2조 4,536억원, 수납금액은 147억원으로 수납률은 0.6%임.

또한, 무한책임사원의 체납세액은 3,268억원이고, 원납세자의 납부금액은 26억이며, 이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은 3,175억원, 수납금액은 2억원으로 수납률은 0.1%에 그치고 있음.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체납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출자자 수납금액
과점 주주	2022	1,416,128	78,823	1,189,147	20,480
	2023	1,910,417	110,517	1,592,509	19,091
	2024	3,041,476	162,931	2,453,666	14,705
무한 책임 사원	2022	2,189	111	2,193	30
	2023	6,673	156	6,932	11
	2024	3,268	26	3,175	2

자료: 국세청

그리고,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신청내역²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효과 현상이 산출되지 않음.³⁰⁾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0)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기업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면제금액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음.

으로 인해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며, 이에 따라 벤처 창업이나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 시 출자자가 지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는 동 제도는, 투자자와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를 유도하고,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동기업 수는 약 829만 9,000개이며, 이 중 벤처기업 수는 약 3만 7,000개로 전체의 약 0.45%에 불과함.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비중]

(단위: 천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동기업 수	6,888	7,286	7,714	8,043	8,299
벤처기업 수	37	39	38	32	37
비중	0.54	0.53	0.49	0.40	0.45

주: 가동기업 수는 중소기업기본통계 기업체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전체 가동기업 중 벤처기업의 비중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벤처산업의 회복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의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둘째,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수는 3만 6,959개사, 평균종업원수는 25.3명이고, 평균매출액은 65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2년에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21.2월)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음.³¹⁾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단위: 개, 억원,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벤처기업수	36,503	39,101	37,686	32,224	36,959
평균매출액	53.0	52.9	59.2	65.4	65.4
평균종업원수	22.20	20.90	22.10	25.10	25.30

주: 2023년 기준 벤처확인기업에 대하여 2024년 12월 공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벤처기업 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만 2,224개 대비 약 12.8% 증가하고 평균종업원수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벤처산업이 고용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실질적인

3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0.)

- '21년 2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등을 평가함에 따라 전체 벤처기업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혁신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와 창업 환경 조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전반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소기업에 해당하고, ②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이어야 하는데,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하여 조세지출이 미비³²⁾하므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기준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³⁾

문 의 처
02)6788-5147

32) 최근 3년간 벤처기업 출자자 2차 납세의무면제 신청자가 없음.

33)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p.4-5.

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 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 ◦ 벤처기업 등에 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 창업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 공제율 :		○ 벤처기업 등 직·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 공제내용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이재관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3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3천만원~5천만원</td><td>70%</td></tr><tr><td>5천만원 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2">간접투자</td><td>10%</td></tr></table>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10%	<table><tr><th></th><th>본점위치</th><th>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6">직접투자</td><td rowspan="3">수도권외지역</td><td>7천만원이하분</td><td>100%</td></tr><tr><td>7천만원~1.5억원</td><td>70%</td></tr><tr><td>1.5억원초과분</td><td>30%</td></tr><tr><td rowspan="3">수도권</td><td>5천만원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3">간접투자</td><td>30%</td></tr></table>			본점위치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수도권외지역	7천만원이하분	100%	7천만원~1.5억원	70%	1.5억원초과분	30%	수도권	5천만원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초과분	30%	간접투자			3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10%																																					
	본점위치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수도권외지역	7천만원이하분	100%																																				
		7천만원~1.5억원	70%																																				
		1.5억원초과분	30%																																				
	수도권	5천만원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초과분	30%																																				
간접투자			30%																																				

현행	개정안																													
	(천하람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5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 초과분</td><td>30%</td></tr><tr><td colspan="2">간접투자</td><td>20%</td></tr></table> (안도걸의원안) <table><tr><th colspan="2">구간</th><th>공제율</th></tr><tr><td rowspan="3">직접투자</td><td>5천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5천만원~1억원</td><td>70%</td></tr><tr><td>1억원 초과분</td><td>30%</td></tr><tr><td>간접투자</td><td>2억원 이하분</td><td>15%</td></tr><tr><td></td><td>2억원 초과분</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제132조의2제3호) - 간접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포함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분	1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0%																												
구간		공제율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1억원	70%																												
	1억원 초과분	30%																												
간접투자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분	10%																												
	○ 공제한도 : - (안도걸의원안) <table><tr><td>간접투자</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td></tr><tr><td>직접투자</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td></tr></table> <삭 제>(안도걸의원안)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간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	직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간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																													
직접투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재관의원안 2025. 4. 18. 발의(의안번호 9946),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6건의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와 더불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6조는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³⁴⁾이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 등’³⁵⁾(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30%에서 100%³⁶⁾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이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8) (생략)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서 생략)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35)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개인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 경우도 해당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36)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그 출자·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11년 이전까지는 투자 방식에 관계없이 10%로 동일하였으나, 이후 직접투자³⁷⁾(이른바 ‘엔젤투자’³⁸⁾)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는 직접투자는 출자·투자금액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공제율이, 간접투자³⁹⁾는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연혁]

구 분		~2011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공제율 (제16조)	직접투자	10%	20%	30%	30%/ 50%	30%/ 50%/ 100%	30%/ 70%/ 100%
	간접투자	10%					
공제 한도 (제 16조)		종합소득금 액의 30%	종 합소득금액의 40%		종 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 132조의2)		직접투자·간접투자 모두 적용			간접 투자만 적용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8)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는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며, 엔젤투자는 투자한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단시간에 밑천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 방식임.

3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075억원에서 2024년에는 1,8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11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1,075	1,785	1,905	1,861	2,027	2,11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먼저, 이재관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을 20%p 상향(10% → 30%) 하고,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역에 따라,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공제율 10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하고, ②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 10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각각 차등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천하람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10% → 20%)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구간을 변경하여, 공제율 100%를 적용받는 구간을 현행 “3,000만원 이하분”에서 “5,000만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분”에서 “1억원 초과분”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은 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 구간을 나누어, 2억원 이하의 경우 5%p 상향(10% → 15%)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행 유지하며, ②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구간을 변경하여, 공제율 100%를 적용받는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70% 구간을 현행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에서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으로, 공제율 30% 구간을 현행 “5천만원 초과분”에서 “1억원 초과분”으로 각각 확대하며, ③ 간접투자의 공제한도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과 5,0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하고, ④ 법 제132조의²⁴⁰⁾에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삭제 <2014. 1. 1.>
 - 나. 삭제 <2014. 1. 1.>
 - 다. 삭제 <2014. 1. 1.>
 -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벤처기업 간접투자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5건의 개정안은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재관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은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각각 연장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벤처투자조합의 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2019년 170개, 4.24조원에서 2021년 404개, 9.54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기준 조합 수는 286개, 조성금액은 5.75조원 수준으로 2021년을 고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수 및 조합 결성금액]

(단위: 개,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수	170	206	404	380	290	286
결성금액	42,485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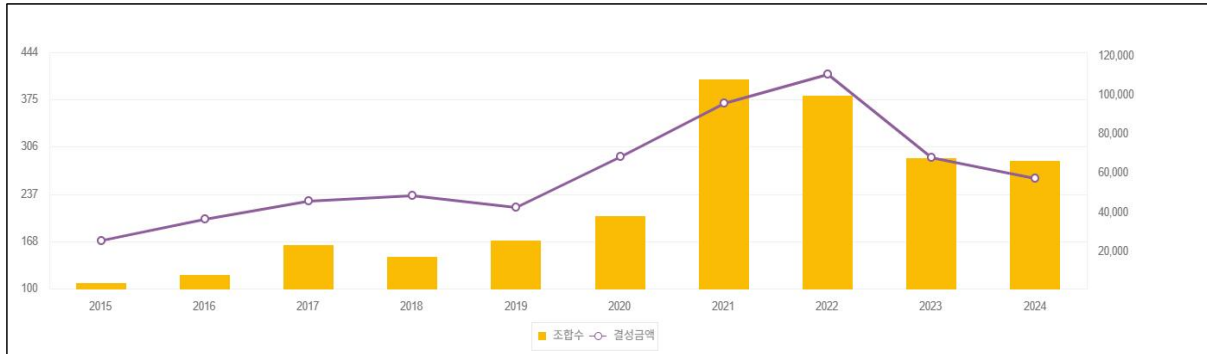
8. 삭제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e-나라지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투자 수익률 상승에 따라 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⁴¹⁾

둘째, 이재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안도결의원안의 경우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등 여러 차례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이와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재관의원안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해 더 유리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구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벤처 기업수는 38,216개사로 그 중 수도권(서울, 경기,

41) 특히 OECD 16개국의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패널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사회적 수익률이 공공 R&D나 일반 사업체(business)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대학이나 기업으로부터 양산된 지식의 흡수율을 제고하는 등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The economic impact of venture capital, Annaleena Parhankangas”

인천)이 65.3%인 24,974개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⁴²⁾으로 확인
됨.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0,905	1,637	476	1,200	1,336	685	703	1,508	1,282	12,278	1,791	701	936	887	1,385	289	217	38,216

자료: 벤처기업 현황자료(기준일: 2025. 9. 30),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비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에 대해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되므로,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벤처기업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주로 고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향상은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음⁴³⁾.

둘째,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17년 이후 사실상 동일하나, 신규 투자금액의 경우 2021년 7.6조원을 기록한 이후 일

42) 벤처기업 현황자료(기준일: 2025. 9. 30),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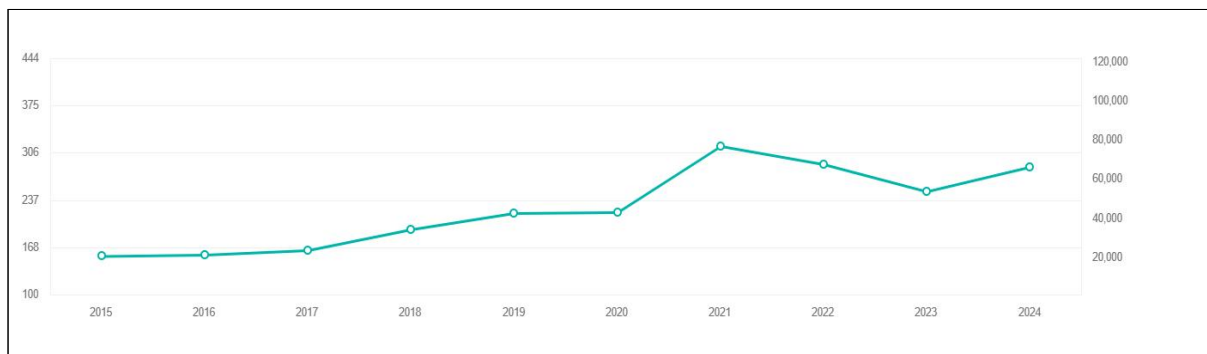
43) 현 제도는 현재도 이들의 절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고소득자들의 재테크…벤처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조선비즈, 2023.1.5.)

부 감소하다가 2024년 6.6조원을 회복하였음. 추가적인 제도변경 없이도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효과가 현재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벤처기업 투자 및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은 추가적인 유인 제공 필요성 유무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도 최근 수년간 조세지출 규모가 2배 이상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 효과는 현재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임.⁴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 금액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투자금	42,777	43,045	76,082	67,640	53,977	66,315



자료: e-나라지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한, 정부는 간접투자의 경우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낮을 수 있어,⁴⁵⁾ 현행 공제율 수준이 적정하며, 직접투자의 경우

44)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억원): ('20) 891, ('21) 1,075, ('22) 1,785, ('23) 1,905, ('24) 1,861, ('25e) 2,027, ('26e) 2,116

45) 「벤처투자법」 제51조 등에 따라 벤처 펀드 투자금(간접투자) 중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의 비율이 40%수준에 그칠 수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 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소액 투자자가 많아 공제구간 조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

□ 또한 이재관의원안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 전용 벤처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공급⁴⁶⁾하고, 지역 유망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재정 투입을 통한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⁴⁷⁾ 역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할 수 있는 점⁴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는 연 평균 1,8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⁴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46)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2024.5.13.

4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
전기업을 위한 과세 특례(조특법 §121의33, §121의34) 등

48) 소프트웨어형에 속하는 정보통신업형 벤처기업은 제조업형 벤처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
나고, 4차 기업의 입지적 패턴 역시 대도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입지 특성”, 박종화

49)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는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만 추계한 것임(공제율 인
상에 따른 세수효과 제외)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이재관의원안	△1,895	△1,895	△1,895	-	-	△5,685	△1,895
천하람의원안	△1,895	△1,895	△1,895	-	-	△5,685	△1,895
윤준병의원안	△1,895	△1,895	△1,895	△1,895	△1,895	△9,475	△1,895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348억원(연평균 2,116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2,116	△2,116	△2,116	△6,348	△2,116

문 의 처

02)6788-5149